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사례 전파

<2024.4.1. 교무팀>

1. 관련 법령 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 제14조(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)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, 팩스,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 1. 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

1.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
2. 사고조치 내용, 사고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·대응계획
3. 그 밖에 사고 내용·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

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·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.

2. 사고 사례

사고 개요	관련 사진
<p>연구실책임자 : 홍 ○ ○ 교수 연구활동종사자 : 신 △ △ 학부생</p> <p>(사고일시) 2024.3.6.10시경</p> <p>(사고장소) IPP 현장 실습 장소</p> <p>(사고내용) 사고자는 3월 6일 10시경 IPP 현장 실습 중 기술 물품 이해 및 체험 관련하여 소형 물품을 주차장 차량에 적재 후 경사가 있는 셔터 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함.</p> <p>(주요원인) ▪ 개인 부주의</p> <p>(개선대책) ▪ IPP현장 실습 사전 설명회 안전교육 강화 ▪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사례 전파</p>	<p>[사고 부위]</p>  <p>[사고 장비(장소)]</p> 

- 당신의 안전까지 실험하지 마세요 -